

의안번호	제 56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563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 일몰제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0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